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2. 개정이유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부정 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계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영동군조례 제            호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영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별표]

### 국내 여비 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 실비정산시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정액지급시 (서울특별시 60,000,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은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  
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  
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